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크레딧 제도 관련]

- 고영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604호)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294호)

2023.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목 차

I . 개요	1
1.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294호)	1
2. 고영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604호)	2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군복무크레딧 12개월 확대(위성곤의원안) 및 전체 복무 기간 으로 확대(고영인의원안)	4
2. 출산크레딧의 적용 확대(고영인의원안)	12

I. 개요

1.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29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2. 11. 17.

(3) 회 부 일 : 2022. 11.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단계적으로 추가산입기간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2. 고영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60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고영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2. 12. 1.

(3) 회 부 일 : 2022. 12.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으로 전체 의무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일률적으로 추가 산입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자녀당 산입기간도 12개월 또는 18개월에 불과하며 총 추가 산입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따른 연금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36개월을, 이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4개월을 제한 없이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군복무크레딧 12개월 확대(위성곤의원안) 및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고영인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위성곤의원안은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되,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12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12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위성곤의원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 -----12개월(12개월 이상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단서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고영인의원안 제18조는 현행법상 군복무크레딧의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상한을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 고영인의원안(제18조)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u><후단 신설></u> 1. ~ 4. (생략) ② · ③ (생략)	----- . <단서 삭제>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생략)	

나. 군복무크레딧 제도 현황

-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줌으로써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도입되었음.¹⁾

1) 「국민연금법」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적용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며,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됨(법 제18조제1항).
-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역연금법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추가산입 대상에서 제외됨(법 제18조제2항).
-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함(법 제18조제1항).
- 추가가입기간에 대한 인정소득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당시 적용되는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2로 함(법 제51조).
- * 출산크레딧은 추가가입기간에 대한 인정소득을 A값으로 함.
- 군복무크레딧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함(법 제18조제3항).

다. 검토의견

- ☐ 현행법상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산입하고 있음.
- ☐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을 확대하면 개인 부담 없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이 확대되므로 병역의무 수행자의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병역의무 수행자의 노령연금액 인상을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며 군복무로 인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
므로 각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두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 제도는 「국민연금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제도인데, 보
장을 강화할 경우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다른 직역연금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개인 부담으
로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개인부담 없이 복무기간을 추
가 산입하는 국민연금의 크레딧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 둘째, 군복무크레딧 확대에 의한 추가재정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위성곤의원안은 2063년부터 10년간 연
평균 3,481억원의 비용을, 고영인의원안 중 군복무크레딧에 대해
서는 2063년부터 10년간 연평균 7,483억원의 비용을 국가가 추
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계되는데,

- 군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라는 개정안의 목적과 재정부담을 수반
하는 정책수단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

위성곤의원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추가재정소요: 2063~2072년

(단위: 억원)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18조제1항)	2063	2064	2065	2066	2067	합 계	연평균
	685	1,348	2,010	2,655	3,248	34,805	3,481
	2068	2069	2070	2071	2072		
	3,823	4,402	4,966	5,537	6,131		

고영인의원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추가재정소요: 2063~2072년

(단위: 억원)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18조제1항)	2063	2064	2065	2066	2067	합 계	연평균
	1,472	2,898	4,321	5,709	6,983	74,831	7,483
	2068	2069	2070	2071	2072		
	8,220	9,464	10,678	11,905	13,181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2063년부터 2072년의 10년으로 설정

2 2023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셋째, 위성곤의원안에서는 12개월의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12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12개월 미만의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군복무크레딧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서, 현행 규정에 따라 군복무크레딧을 적용받고 있었던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군복무크레딧 적용을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바²⁾, 종전보다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는 일부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현행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현행법상 인정되는 군복무크레딧 산입 기간인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6개월 이상인

2) 위성곤의원안 부칙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고 있음.

- 현역병 복무 중 의가사제대³⁾, 의병제대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에 의한 제대⁴⁾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에 따라 단기간의 병역 의무 수행기간을 갖게 될 수 있음.

□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으로 군복무크레딧 기간을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김병기의원안·정청래의원안 및 박광온 의원안과 군복무크레딧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확대하려는 박성준의원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⁵⁾

- 박성준의원안은 12개월 이상의 병역의무 수행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군복무크레딧을 인정하는 점에서 위성곤의원안과 유사하나,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수행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지 않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을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

3)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인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4)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21163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2인)

[21021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21048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21060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여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정청래의원안과 고영인의원안의 취지는 유사하며, 박광운의원안의 경우 군복무크레딧 기간의 인정소득을 현행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의 2분의 1에서 A값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김병기의원안은 군복무크레딧의 적용을 현행법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 군복무라는 사회적 가치 있는 행위 및 소득 공백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그 보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상당한 소요재원을 감안하여 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협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제5차 종합운영계획(연금개혁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2. 출산크레딧의 적용 확대(고영인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i) 자녀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출산크레딧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① 자녀당 추가산입 기간을 현행 첫째 자녀는 불산입,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산입하는 것에서 첫째 자녀는 36개월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24개월을 산입하도록 하고,

②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한도를 현행 50개월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하며,

□ (ii) 출산크레딧에 대한 일반회계 재정 부담을 늘리기 위해,

현재 법률에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소요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고영인의원안(제19조)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2 이상의 자녀</u> 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u> ----- ----- ----- ----- ----- -----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 <단서 삭제>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1명인 경우: 36개월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36개월에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24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출산크레딧 제도 현황

-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음.
- 현행법상 출산크레딧의 적용대상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이며,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 2007. 12. 31. 이전에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가입자가 2008. 1. 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가입기간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는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각각 추가해주고 있으며, 최대한도는 50개월까지임.

<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출산크레딧 추가 산입기간 >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18개월)	48개월(+18개월)	50개월(+2개월)

* 주: '08. 1. 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둘째 자녀에는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는 1명당 18개월 추가 인정

*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출산크레딧을 통해 가입기간 연장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가능성 증대와 노령연금액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출산크레딧으로 추가산입된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를 한 것으로 적용하고 있음.

- 출산크레딧을 통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은 부모가 합의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쪽에 대해 산입해주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균분하여 부모 양쪽에 대해 산입해주는 방식을 채택함.

다. 검토의견

(1)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

- 개정안은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취지로 박광온의원안(의안번호 제15248호), 남인순의원안(의안번호 제1362호), 김성주의원안(의안번호 제2202호), 최혜영의원안(의안번호 제10661호) 및 위성곤의원안(의안번호 제12112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를 비교하여 검토하겠음.
- 개정안과 관련 5건의 개정 법률안은 모두 가입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추가 산입하는 점에서는 동일함.
 - 현행법은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함.
- 다만, 개정안은 관련 법률안과 다음의 각 사안 별로 내용이 상이함.
 - (i) 둘째 자녀부터 한 자녀당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개월 수
 - (ii) 가입기간 추가 산입 상한선 폐지 여부
 - (iii) 출산크레딧 명칭 변경 여부
- 이를 순서대로 비교하면,

- 첫째, 둘째 자녀부터 한 자녀당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은 남인순 의원안은 최대 12개월이고, 현행법·김성주의원안·최혜영의원안·위성곤의원안이 최대 18개월이며, 개정안은 24개월, 박광온의원안은 한 자녀당 36개월임.
- 둘째, 현행법과 남인순의원안·김성주의원안·최혜영의원안은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50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위성곤의원안·박광온의원안은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있음.
- 셋째,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개정안과 김성주의원안·최혜영의원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남인순의원안·위성곤의원안은 “양육크레딧”으로 규정하며, 박광온의원안은 이를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있음.

<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비교표(출산크레딧 확대 개편 관련) >

구분		현행	개정안	박광온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최혜영의원안	김성주의원안	남인순의원안
첫째 적용		×	○					
(i) 가입기간 추가산입 (개월)	첫째	-	36	36	24	12	6	12
	둘째	12	60(+24)	72(+36)	42(+18)	30(+18)	18(+12)	24(+12)
	셋째	30(+18)	84(+24)	108(+36)	60(+18)	48(+18)	36(+18)	36(+12)
	넷째	48(+18)	108(+24)	144(+36)	78(+18)	50(+2)	50(+14)	48(+12)
	다섯째	50(+2)	132(+24)	180(+36)	96(+18)	50(+0)	50(+0)	50(+2)
(ii) 추가산입 한도		50개월	한도 폐지			50개월		
(iii) 명칭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	출산·양육 크레딧	양육 크레딧	출산 크레딧		양육 크레딧

□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실질적인 자녀 양육 기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⁶⁾,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약 32.9%이며, 7년 이내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가 0.98로 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⁷⁾ 개정안과 같이 첫째 자녀에 대한 유인 제공이 필요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출산·양육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합계출산율 증대 효과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선 효과로 환류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상당하므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와 비교하여 2022년부터 2088년까지 각각 34.6조원(김성주의원안), 63조원(남인순의원안), 94.9조원(최혜영의원안), 166.9조원(위성곤의원안), 274.2원(개정안), 345.7조원(박광온의원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출산크레딧의 적용 확대 논의는 제5차 재정계산(2023년 완료) 등 연금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편과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음.

6)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 3.8 역대 최저치, 2021년 기준

7) 7년 이내 신혼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율 32.9%, 평균 자녀 수 0.98명(통계청 신혼부부 통계, 2021년 12월 발표)

< 관련 법률안별 추가재정소요 검토 >

(단위: 명, 가구, %)

구분	출산 자녀 수					2022~2088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총소요	추가소요
현 행	-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102.6조	-
추가 효과	-	28,820원	72,070원	115,310원	120,110원		
김성주 의원안	6개월	18개월	36개월	50개월	50개월	137.2조	34.6조
추가 효과	14,410원	43,240원	86,480원	120,110원	120,110원		
남인순 의원안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0개월	165.6조	63.0조
추가 효과	28,820원	57,650원	86,480원	115,310원	120,110원		
최혜영 의원안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50개월	197.5조	94.9조
추가 효과	28,820원	72,070원	115,310원	120,110원	120,110원		
위성곤 의원안	24개월	42개월	60개월	78개월	1명당 18개월 (한도 없음)	269.6조	166.9조
추가 효과	57,650원	100,900원	144,140원	187,380원	216,210원		
고영인 의원안	36개월	60개월	84개월	108개월	1명당 24개월 (한도 없음)	376.8조	274.2조
추가 효과	86,480원	144,140원	201,800원	259,450원	288,280원		
박광운 의원안	36개월	72개월	108개월	144개월	1명당 36개월 (한도 없음)	448.3조	345.7조
추가 효과	86,480원	172,970원	259,450원	345,940원	432,420원		

주: 최혜영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 시점 변경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4차 재정계산 모형 및 22년 불변가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다섯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실적 없이도 11년(첫째 3년 + 추가 4자녀 × 2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게 됨.

- 이에 출산크레딧만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게 되는바, 이 경

우 기여에 따른 수급이라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출산크레딧 일반회계 전부 부담

□ 개정안은 출산크레딧 소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 19조제3항⁸⁾에서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이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정하지는 아니하나, 예산상으로 일반회계 30%, 기금 70%의 분담비율을 준수하고 있음.

< 출산크레딧 일반회계-기금 예산 현황(2018~2022회계연도) >

(단위: 억원, %, 명)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전입금(A)	1.57	1.77	1.77	1.99	3.38
기금 부담분(B)	2.51	3.3	5.65	9.16	7.89
예산 총액(A+B)	4.08	5.07	7.42	11.15	11.27
분담률(A/(A+B)) %	38.5	34.9	23.9	17.8	30.0
지원 인원	1,000	1,354	2,067	2,959	2,495

주: '22년은 예산 기준

□ 관련 법률안으로 출산크레딧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최혜영의원안(제10661호·제13319호) 및 위성곤의원안(제12112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의 소요 재원 분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8)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규정하도록 한 이종성의원안(제13152호) 및 일반회계가 현행보다 더 많은 70%를 부담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는 박광온의원안(제15248호)도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대조표(재원 분담 관련) >

현행	개정안	위성곤 의원안	최혜영의원안 (10661·13319)	박광온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일반회계 30% 기금 70% ※ 법정 부담 비율 없음	일반회계 100%			일반회계 70%, 기금 30%	대통령령으 로 부담 비율 규정

□ 출산크레딧은 출산장려의 국가정책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을 가입자의 보험료로 구성된 연금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기여에 따른 수급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⁹⁾

- 출산크레딧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고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출산크레딧 대상 가구의 노령연금액 인상을 위해 다른 가구가 기여 부담을 지게 되는 재분배 효과가 나타남.

□ 그런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본래 가입자 간 소득 재분배기능을 하고 있고,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출생률 제고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므로, 출산크레딧 재원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 부담이 합리적인 측면도 있음.

9)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참고로 현재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산식 상 가입자 평균 소득 수준인 A값이 사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사람에 비해 기여 대비 더 많은 수급을 하는 재분배 기능이 있음.

<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산식 (법 제51조 및 부칙) >

$$\text{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c(A+B)(1 + \frac{0.05n}{12})$$

* c : 소득대체율 반영 상수(2008년 1.5, 2009년부터는 매년 0.015 하락하여 2028년에 소득대체율 40% 수준인 1.2에 도달)

* A값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값 :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현재가치 계산)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한편,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재원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금은 일반회계와 기금의 부담이 적으나,¹⁰⁾ 장기적으로는 2083년까지 199조원¹¹⁾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미래 재정부담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출산크레딧에 대한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국민연금의 공적 연금으로서의 성격 및 출산크레딧의 출산율 제고 효과, 그리고 장기적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2021년 결산 기준 총 11억 1,500만원

11) 국민연금연구원 추계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반영을 위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함.
- 출산크레딧 제도가 출산을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제4차 종합계획안에 반영(첫째아 6개월)되었으나 소요재원 문제로 여러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다만,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5차 종합운영계획(연금개혁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

